



# 보도 자료

미국 노동청 | April 7, 2016

BOS 2016-56c

## 뉴욕시 네일 살롱 작업자들, 임금 및 기타 노동법 위반 직면 미국 노동청, 고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노동법 문제 의식 제고

**뉴욕** –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인 곳의 네일 살롱 작업자들이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노동청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때로는 언어 장벽을 가지고 있거나 불만을 선뜻 제기하지 못하는 취약한 작업자들입니다.

**건강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네일 살롱 작업자들은 빈번히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노동에 대해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시간과는 연방 초과 근무 수당 및 기록보관 규정을 위반한 2 개의 뉴욕시 살롱을 찾은 것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시간과의 조사에서는 81 W. Broadway in Manhattan 에 위치한 Ada Nails & Spa 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하루 일당에 커미션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살롱은 근로자가 주당 40 시간 일을 하였을 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일한 모든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였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기본 고용 및 월급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한 건은 151-91B Cross Island Parkway in Whitestone 에 위치한 Hai Hua Beauty Salon Inc.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하루 일당에 커미션을 지불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일한 정확한 시간 및 월급 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것입니다.

Ada Nails & Spa 는 12 명의 근로자에게 초과수당을 \$23,704 지불하였고 Hai Hua Beauty Salon Inc.는 9 명의 근로자에게 \$23,643 를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용주의 경험은 모든 뉴욕시의 네일 살롱 소유자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산업계는 많은 수의 취약 작업자를 고용하며 그들 많은 이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언어 장벽이 있으며 불만을 쉽게 제기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일 살롱 근로자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권리** 및 책임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맨하탄 임금시간과 지역 부사무소장인 Debbie O. Lau 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및 네팔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고용주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많은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조사관들은 이러한 언어에 능통하며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통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와 고용주들은 임금시간과 직원들과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우리가 작업자의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법을 집행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정노동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보호사항입니다:

미국 임금시간과 보도 자료는 <http://www.dol.go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의 **적절한 편의 리소스 센터**는 부서 정보 및 문서를 점자 및 큰 활자체를 포함한 기타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기타 형식을 요청하시려면 부서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693-7828 (음성)이나 (800-877-8339 (연방 중계 서비스)).

### 근로 시간에 대한 지불:

- 작업자는 반드시 고용주가 사전 승인한 여부와 상관없이 수행한 모든 작업 시간에 대해 지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트레이닝, 낮에 현장 간의 이동 및 "퇴근 후" 수행한 모든 작업을 포함합니다.

### 최저 임금 및 공제:

- 작업자는 반드시 일한 매 시간에 대해 시간당 연방 최저 임금인 \$7.25 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 일당 또는 성과급으로 지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뉘었을 때 지불받은 금액은 반드시 매 일한 시간은 연방 최저 임금과 최소 동등하여야 합니다.
- 일부 주법은 더 높은 최저 임금 및 또는 근로자 보호를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초과 수당 지불:

- 일반적으로,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주에서 40 시간을 넘어 작업에 대해서는 모든 시간에 대해 그들의 지불 요율의 1½ 배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 기록 보관:

-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일별 및 주별 작업 시간 그리고 지불된 임금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반드시 일한 시간 및 임금, 고용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있는 자신의 기록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독립 계약자 또는 근로자?

일부 살롱은 근로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은 더 많은 건강 및 안전 보호, 임금 보호 그리고 다른 혜택을 받으므로 이 둘 간의 차이에 대해서 작업자들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이 근로자인지 독립 계약자인 지 잘 모르는 작업자들은 근로자의 작업장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임금 시간과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임금시간과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작업장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작업자를 어떤 해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복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작업자가 자신의 권리가 위반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시간과에 전화를 주시거나(1-866-487-9243) 또는 뉴욕시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맨하탄은 212-264-8185, 브루클린은 718-254-9410). 임금시간과는 모든 언어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서비스는 무료이고 기밀로 유지됩니다.

###

### 매체 연락처:

Ted Fitzgerald, 617-565-2075, [fitzgerald.edmund@dol.gov](mailto:fitzgerald.edmund@dol.gov)

보도 번호: 16-743-BOS

미국 임금시간과 보도 자료는 <http://www.dol.go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의 [적절한 편의 리소스 센터](#)는 부서 정보 및 문서를 점자 및 큰 활자체를 포함한 기타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기타 형식을 요청하시려면 부서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693-7828 (음성)이나 (800-877-8339 (연방 중계 서비스).